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9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선민 · 서미화 · 이주희
강경숙 · 서왕진 · 전진숙
황운하 · 정춘생 · 신장식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운행기록”을 “특수번호판 기준 및 교체 절차·방법, 제7항에 따른 운행기록”으로 한다.

⑥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9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추가한 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9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기존 번호판에 형광색등을 추가한 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⑥ (생 략)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u>운행기록</u>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3(벌칙)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 -----<u>특수번호판</u> 기준 및 교체 절차·방법, 제7항에 따른 <u>운행기록</u>----- -----. 제148조의3(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